아동 놀이의 국가적 정책화 : 영국의 사례*

Children's Play as a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 The Case of the UK*

이종희(Jong Hee Lee)[1)]

ABSTRACT

This study reviews policies related to children's play which are being implemented by the UK at a national level from 2008 to 2020. Th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in cooperations with other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strategy. The purpose of the strategy is to improve play opportunities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England by raising the value and status of play in every community.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y by focusing on firstly, the purpose, vision, and steps to be undertaken; secondly, the methods used and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irdly, the legal, social, and academic basis upon which the strategy is founded. By way of conclusion, the researcher argues that we need to consider and learn from the case of the UK to come up with desirable polices for children's education and well-being.

Key Words : 아동 놀이(children's play), 놀이정책(play policy), 놀이전략(play strategy), 영국(United Kingdom).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군 주제 중 하나는 정부가 선포한 '사교육과의 전쟁'이었다(아시아경제, 2009. 7. 7).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넘긴 2009년 6월 무렵,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을 와해시키고, 아동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출산율 저하까지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국가적 전쟁의 대상이 되었다. 2008년의 국가 예산이 약 240조원인 우리나라에서 같은 해에 국민이 소비한 사교육비의 규모는 20조 9000억 원으로

---

* 본 논문의 출간에 앞서 발행된 2010년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45쪽 2번째 문단은 본 논문의 일부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본 연구는 2009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연구년 제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ong Hee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23-1 Wolgogdong Sungbukgu, Seoul 136-714, Korea
E-mail : jhlee@dongduk.ac.kr

(뉴시스아이즈, 2009. 7. 7), 이는 전년도보다 8천 6백억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이렇게 보면 사교육은 국가적 전쟁의 대상으로 간주될만하다.

그러나 사교육 척결을 선언한 새 정부의 이런 의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정계의 한 인사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과외수업을 단속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넌센스"라고 하며 비판하였다(세계일보, 2009. 6. 26). 또한 사교육과의 전쟁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안들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 자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 산하의 미래기획위원회나,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는 입장과 안들이 제각각이어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공감코리아, 2009. 7. 7).

아동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사교육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을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 연설에서 미국 교육의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그들(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미국)도 할 수 있다"(mbn 뉴스채널, 2009. 3. 11)고 말하여 우리나라의 뉴스와 일간지가 이를 앞 다퉈 보도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를 대비한 수업확충모델로 교육시간의 개혁에 있어서는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렇게 펼친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표명은 미국이 아동교육정책으로 십 년 가까이 적용해오고 있는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2001년 말 부시 대통령 재임 시 낙오학생방지법을 통과시킨 이후,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數學) 능력에 대한 획기적인 향상을 꾀하고 각 주(state)의 차원에서 학생 평가시험의 횟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왔다(연합뉴스, 2009. 6. 16). 그 후 새로 집권한 오바마 정부는 낙오학생방지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의 경기부양에 책정된 예산 중 약 1/8인 1000억 달러(약 115조 원)를 교육개혁에 배정하기로 하였고, 그 중 44억 달러(약 5조 원)를 우수학교 지원, 우수교사 성과급, 그리고 국가 차원의 학력평가 시험 도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연합뉴스, 2009. 6. 16; 중앙일보, 2009. 7. 25).

그러나 미국에서도 현행 아동 교육정책의 핵심인 낙오학생방지법을 두고 무수한 논쟁이 있었다. 특히 읽기와 수학 등 정부가 강조하는 특정 과목에만 교사와 학생들의 노력이 편향되고, 이외의 교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성취는 전적으로 무시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The New York Times, 2009. 9. 24; Wikipedia[1]). 또한 국가가 정한 부문에서 일정 기준을 성취하지 못한 학교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학교가 폐교되기도 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보다는 수월성과 결과적 책무성만을 강조한다는 반론이 팽팽했다(한국일보, 2006. 7. 26; The New York Times, 2009. 8. 27; The New York Times, 2009. 8. 28). 현재의 오마바 정부가 낙오학생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긴급 지원책들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와 같은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상기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현재 사회적·정치적으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교육에 관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단상이다. 물론 나라가 다르므로 두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논란의 내용은 다르다. 그러나 두 나라가 아동에 관련된 주요 문제를 선별하고,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 가지는 학습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요

1) http : //en.wikipedia.org/wiki/No_Child_Left_Behind_Act.에서 검색(2009. 9. 24)

하는 최우선의 문제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해결책(top-down approach)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러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부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시급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의 판단이나 접근, 그리고 상향식 또는 양방식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아동 교육과 놀이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영국이 적용하기 시작한 놀이정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아동에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학습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특히, 놀이정책에 관련된 시각과 접근 방법이 몇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이었다. 첫째로, 아동의 놀이를 '국가적 전략(national strategy)'으로 택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었다. 왜냐하면 아동의 놀이는 대다수의 국민과 행정가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급한 국가적 문제로 규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 영국 정부가 아동의 놀이를 정책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이례적이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계기와 자료를 통해서 이론과 목적 등 기반이 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침과 실제적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했다. 셋째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채로웠다. 즉 정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공략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와 관련되는 실태자료와 견해를 폭넓게 수집하고 해결 방식을 다양하게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접근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자가 영국의 놀이정책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하고자 한 동기는 바로 이러한 특이성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영국의 놀이정책은 아동에 관한 문제를 쟁점화 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사교육 문제', '학습 저하 문제' 등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들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도 문제를 진단하고 공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영국의 예를 통해서, 어떤 인식이나 문제제기로부터 아동의 놀이가 국가적 정책에로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놀이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어떤 전략과 방법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등을 배울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 하에 본 연구자는 영국의 놀이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구체화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전략으로서의 놀이정책은 무엇인가?

둘째, 영국의 놀이 정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는가?

셋째, 현재의 놀이 정책이 시작되기까지의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영국의 현 놀이정책을 개괄하고, '놀이정책'이라는 것에 담겨질 수 있는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영국이 놀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과, 정책의 수립과 진행을 위하여 협력을 구한 기관들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 놀이정책 이전의 배경에 관한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최근 10여 년 간 영국 내에서 부상된 놀이에 관한 학문적·사회적·법률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놀이정책이 '획기적인 발상으로 제기되

어 단 시간에 구상된' 유형의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예 : 네이버, 구글 등)를 통해서 놀이정책에 관한 자료를 연속적으로 검색·수집·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놀이정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아동교육과 놀이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제놀이협회(International Play Association) 사이트를 검색하면서였다. 영국의 4개국 가운데 웨일즈의 놀이정책에 관한 자료를 탐구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의 다른 3개국에도 놀이정책이 있는지, '국가적 전략'으로 지칭되는 영국의 현 놀이정책은 그 이전의 놀이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놀이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담당한 기관은 어떤 단체인지, 자료에서 언급되는 여러 단체와 행정부들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인지, 정부부서명 및 부서내의 지위명 그리고 정책명 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 이어지는 수많은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내용분석과 함께, 문헌이 집필된 시기별 대조작업과 용어확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놀이정책 상황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수집도 병행하였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접속한 여러 사이트의 종류와 관련 작업은 다음과 같았다.

① 사전 사이트 : Wikipedia에서 미국과 영국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확인

② 기사 사이트 :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기사를 검색

③ 정부 사이트 :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청, 지방자치단체; 영국의 중앙정부, 아동·학교·가족부, 지방정부

④ 놀이관련 사이트 : 국제놀이협회(IPA), 영국 아동단체총연합회(NCB), 영국연합 4개국의 놀이정책 실무 부서(Play Wales, Play Scotland, Playboard Northern Ireland)

⑤ 기타 사이트 : 우리나라의 서울문화재단 사이트; 영국의 도시공학, 학교건축, 복지재단 사이트 등

수집된 자료들의 목록은 본 연구의 각주와 참고문헌에 기재하였다. 단, 참고문헌의 자료들은 기사 종류를 제외하고는 단행본의 형태로 기재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들 단행본의 대부분은 인터넷 서적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Amazon)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Ⅲ 연구결과 : 국가 전략으로서의 영국의 현 놀이정책

영국의 정책은 영국의 국가구성과 정체제도를 고려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별로 영국의 놀이정책을 고찰하기에 앞서 간략히 살펴보면,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이루는 4개국 연합국가이다(Wikipedia[2]). 정치제도로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함께 택하고 있는 영국의 행정수반은 총리(Prime Minister)이다. 영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연합정부인 UK Government와 중앙의회(Central Parliament)이다. 그러나 UK 정부와 의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2) http : //en.wikipedia.org/wiki/United_Kingdom에서 검색(2009. 9. 24)

정책이 연합 4개국에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통상, UK 정부와 중앙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은 4개국 중 자치정부(devolved government)가 따로 없는 잉글랜드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나머지 3개국은 각각의 자치정부와 의회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의회에서 입안과 결정을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치정부가 있는 3개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중앙의회의 의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국 전체에 관한 사안과 함께, 자치정부가 따로 없는 잉글랜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선거구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은 나머지 3개국에 대한 대표성은 없으므로 3개국의 자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 그렇다면 4개국 중 잉글랜드는 다른 3개국에 비하여 자치성이 떨어지는 나라라는 추측이 가능하나, 면적상으로도 영국 전체의 반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전 인구(2009년 추산 약 6천 1백만 명)의 4/5 정도가 잉글랜드 국민이고, 의원을 선출하는 전체 선거구 646개 중 529개가 잉글랜드에 해당하므로 잉글랜드는 여러 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할 영국의 놀이정책은 2007년 초에 고든 브라운이 총리직을 맡게 된 후, 그 해 12월에 중앙의회에서 통과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적용이 4개국 가운데 주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영국의 이러한 정치적・인구적・지리적 특이성 때문이다.

1. 개요, 목적, 내용

개요 : 2007년 12월에 중앙의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현 놀이정책은 'Children's Plan'(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7)이라는 국가적 아동정책의 핵심부분을 구성한다. 영국의 현 놀이정책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중앙정부가 놀이에 대한 비젼과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 놀이정책의 주도 행정부는 아동・학교・가족부(DCSF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로, 2007년 초에 브라운 총리가 취임한 후 그 해 6월에 아동 및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기술부(DfES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를 개편한 부서이다. 개편된 아동・학교・가족부는 새로 시행하는 놀이정책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 지역공동체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보건부(Department for Health),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등과도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의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정책에 책정된 예산은 2008년부터 20011년까지의 1차 기간 동안 2억3천5백만 파운드이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4천2백억 원에 달하는 액수이다.

영국의 현 놀이정책은 최근에 출간된 정부간행물들에 산재해 있는데, 그러한 간행물들은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07년에 출간된 자료들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출간된 자료들이다. 2007년도 자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새 정부의 아동정책이자 현 놀이정책의 근간인 *Children's Plan*을 설명한 정책보고서(DCSF, 2007)와, 아동의 놀이에 관한 정부 용역 연구보고서인 *Play for a Change : Play, Policy, and Practice*(Lester & Russell, 2007)이다.

2008년의 자료로는 어린이・청소년・부모・

놀이전문가・지역사회 관련자 등으로부터 9000개가 넘는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한 *Fair Play : A Consultation on the Play Strategy*(DCSF, 2008a)와,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국가가 수행하고자 하는 놀이전략의 정신과 추진방법을 밝힌 *Play Strategy- national level play for life*(DCSF & DCMS, 2008)가 있다. 2008년도에 출간된 이외의 중요한 자료들로는 세 가지가 있다. 각 지방정부의 아동위원회(Children's Trust)가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Statutory Guidance to Children's Trust*(DCSF, 2008),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설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적 위험요소(risk)'를 어떻게 고려하고 관리할지를 다룬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Ball et al., 2008), 영감을 주는 놀이공간을 디자인하는 방법과 예를 제시한 *Design for Play : A Guide to Creating Successful Play Space* (Shackell et al., 2008) 등이 그것이다.

상기한 자료들은 현 놀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담당자및 이해를 공유해야할 모든 이들(stakeholders)[3]을 대상으로 집필되었다. 각 자료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대로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나, 중요한 공통점도 있다. 그것은 이 자료들이 상이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공통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면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또한 놀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와 그러한 목적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같은 기조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놀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견고한 이론적 기초와 원칙 위에서 출발한다는 것과, 그러한 맥이 어느 부문에서나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3) 놀이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 건설업계, 지역단체, 학부모, 학교 관련자 등

이처럼 견고한 이론적 기초와 공통된 접근법은 직접적으로는 2007년에 발간된 *Play for a Change*(Lester & Russell, 2007)에 상당부분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change'라는 단어로 사회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의 염원을 나타내는 *Play for a Change*는 놀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폭넓게 제시하면서, 영국의 아동정책과 사회실상을 고찰한 연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이제까지의 놀이연구가 놀이의 가치를 다양하게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아동정책에서는 놀이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되어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견해 하에, *Play for a Change*에서는 이제까지의 놀이연구와, 영국의 아동정책, 그리고 실제 등 세 주제를 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놀이연구, 아동정책, 실제의 삼자간에는 '긴장(tension)'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긴장의 성격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놀이연구와, 아동정책, 그리고 실제 간의 긴장은 어린이와 놀이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학문분야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놀이의 가치는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서 적당히 명문화되는 정도에서 그칠 뿐 구체적인 정책과 실제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책과 실제 영역에서의 놀이에 대한 이해가 다분히 '도구적(instrumental)'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놀이가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해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실제적 기조와는 대조적으로, *Play for a Change*의 연구진이 이제까지의 놀이연구를 고찰한 후 얻은 결론은 놀이의 이점이 예측불가능성, 무 목적성, 자유로움, 자기 주도성 등과 같은 놀이의 본질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지, 무슨 놀이를 하는가에 따라, 즉 컨텐트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자들이 어린이의 발달과 복지를 위해서 놀이를 도입하려면, 놀이 프로비젼[4]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것이 과연 어린이들을 놀게 할 것인가(또는 놀게 하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놀이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성취하게 할 것인가(또는 하였는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놀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어린이의 놀이를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관점과 뇌 과학에서 제시하는 견해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목적 · 내용 : 영국 놀이정책의 목적과 내용은 상기한 자료들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Play Strategy*(DCSF & DCMS, 2008)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Play Strategy*에서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하는 용어는 아마도 '놀이기회(play opportunity)'일 것이다. '교육기회'라는 용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균등성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이기회'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균등한 놀이(fair play)'라는 용어도 등장하는데, 이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거주지, 학력, 종교,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놀이의 기회에 있어서 차별이나 차등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이 현재의 놀이정책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놀이기회의 보장과 개선'이다. 이 정책에서 중요한 몇 가지 전제는 첫째,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는 방과 후의 생활 여건이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 둘째, 아동은 정부가 아니라 부모가 주도하여 양육해야 하며 정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셋째, 아동기는 필히 즐겁고 활동적인 시기여야 한다는 것, 넷째, 청소년기는 건전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 · 사회적 기술을 증진해야하는 시기라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목적과 관련된 정부의 **비젼**은 잉글랜드 전역의 주거지에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매력적이고, 몰입을 유도하는 놀이터와 공원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사회와 주거지 전역이 실질적으로 '친 아동적'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놀이공간의 신축 또는 개축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놀이공간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 내의 공공 공간에 확실한 제 위치(stake)를 갖게 하며, 그들의 놀이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도록 한다는 것도 주요 비젼으로 포함되어 있다.

비젼의 성취를 위한 **실행 계획**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놀이 공간을 더 확보하고, 둘째, 영 ·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아동기 전 기간의 놀이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셋째, 안전한 놀이가 가능하게 하고, 넷째, 친 아동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며, 다섯째, 각 지역사회마다 놀이가 우위의 중요성을 점유하면서 녹아들게 하는 것이다.

상기한 다섯 가지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까지 **정진할 내용**(steps)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 공간의 개축 및 신축'과 관련해서는 우선 2008년부터 3년간 지원될 2억3천5백만 파운드를 기반으로 전국의 행정구(top-tier authorities)에 총 3,500개의 놀이터를 신축 또는 개축한다. 이

4) 놀이가 이루어지는 모든 물리적 공간 및 그 내부의 여건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연환경, 공터, 공원, 운동장, 놀이터 및 그 내부의 구조와 시설이 관련됨.

를 위해서 지역 행정부들(local authorities)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제시한 30개의 팀을 **'놀이 길잡이팀(play pathfinder local authorities)'**으로 선정하여 각 팀이 소속 지역에 맞는 공공 놀이공간이나 모험놀이터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들 놀이 길잡이팀의 수행계획과 진행과정이 다른 지역 행정부들의 향후 사업을 위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0개 팀 중 한 팀을 선정해서 지역주민 · 지역 내 놀이섹터[5] · 지역 행정기관 등 3자 간의 개혁적인 공조모델로서 제시한다. 놀이 길잡이팀 외에도 **'놀이 건설팀(play builder local authorities)'**들을 선정하여 22개의 공공 놀이공간을 개발한다. 이들 놀이 건설팀 역시 혁신적이고, 고무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놀이영역을 어떤 토지에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보인 지역 행정부들 중에서 선정한다.

둘째, '아동기 전 기간의 놀이에 대한 지원'은 영 · 유아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담당하는 정규교육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성취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영유아 보육기관인 Children's Centers가 양질의 놀이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국적 파급(delivery) 기구로 **'어린이를 위하여(Together for Children) 팀'**을 지정한다. 이 팀은 각 Children's Center가 받은 정부 지원금의 효과가 지원금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Center를 다른 기금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주고, Center별로 질 높은 실내 및 실외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한다. 한편, 초 · 중 ·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동 · 학교 · 가족부(DCSF)가 학교 놀이시설의 개선을 위한 매커니즘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 측 담당자가 학교 경영자들과 함께 적합한 놀이시설 자재와 운동장의 예를 함께 논의하고, 학교별로 놀이시설을 적절하게 개발하도록 권장 ·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BSF)라는 중앙정부의 학교시설 개선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의 놀이공간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을 명문화하여 제시하고, BSF와 정부 및 민간 간의 자본 연계를 도모하여 놀이 프로비젼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지역사회가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내놓기로 하였다. 또한 놀이를 초등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위하여 학교의 일과 중 쉬는 시간을 적절하게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로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며, 아동 · 학교 · 가족부(DCSF)와 교육기준국(Ofsted : Office for Standard in Education)이 실시하는 학교 평가의 기준에 놀이 부문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셋째, '안전한 놀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행정부들 가운데 놀이 길잡이팀(pathfinder local authorities)으로 선정된 그룹들이 기획 · 실시할 놀이관련 사업에서 '안전(safety)'과 '위험요소(risk)'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다. 즉, 놀이 길잡이팀들이 지역의 놀이 프로비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아동의 놀이를 감독해야할 필요성'과 '어린이들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게 허용하는 정도' 간의 균형을 안배하여 놀이 프로비젼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놀이 길잡이팀들이 안전과 위험요소 간의 균형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 그 방법론을 향후 출간될 놀이 프로비젼 지침서(guidance on play provision)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 · 가족 · 학교부(DCSF)는 2008년부터 2011년 기

5) 놀이 관련 위원회, 단체, 이론가, 조경 및 건설업자 등

간 중에 놀이 길잡이팀의 기획(schemes)을 통해서 안전한 놀이를 지원할 자원봉사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한편,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 정부가 이미 시행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모든 지역의 교통업무 담당자들에게 친 아동적인 지역사회의 조성과 길거리 안전 그리고 안전한 도로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문서를 보냈으며, 이들에게 어린이들이 노는 모든 장소의 주변에 20mile 속도 제한 존(zone)을 계획하도록 요청하였다. 정부는 또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공공의 이해와 부모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벌인다.

넷째, '친 아동적 지역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 욕구를 놀이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취한다. 정부는 또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관리에 참여할 전문인으로 **'놀이 관리자(Play Shaper)'**를 양성하기로 하고, 이들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다. 특히 놀이 관리자들로 하여금 놀이의 중요성과, 어린이의 놀이와 안전을 지원한다는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충실히 이해하게 하여 그 내용을 전국으로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둔다. 정부는 이 외에도 주거정책 담당 행정부와 협조하여 공동 주택의 디자인과 건설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이러한 놀이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다섯째, '모든 지역 행정부가 놀이를 우선적인 정책 주제로 다루고, 결정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놀이여건 개선이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 set)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입증해 보이기로 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아동위원회(Children's Trust)가 지역사회의 놀이기회 개선을 위한 협력 파트너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아동위원회의 법적 임무에 관한 지침서(*Statutory Guidance to Children's Trusts*)> (DCSF, 2008b)를 개정·제시하여 각 지역의 아동복지 담당 행정관(Directors of Children's Services)이 놀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명시하였다. 아울러, 놀이정책의 실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파트너 기구인 Play England는 지역행정부와 아동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국가적 놀이전략의 수행(*Implementing Play Strategy*)>이라는 지침서를 발간한다. 정부는 또한 놀이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20011년까지 1차로 4,000명의 놀이 종사자(play workers)를 양성하고, 이들이 3개 수준으로 차별화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놀이종사자 자격 취득 및 관리 방법을 개발한다.

이와 같은 놀이정책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내용은 정책적 모태라고 할 수 있는 Children's Plan(CP)의 여섯 가지 목표와도 연관된다.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자국의 모든 어린이를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게 한다는 CP의 목표는 앞서 언급된 놀이정책의 내용 중 전국적인 놀이시설의 신축 및 개축, 그리고 실질적인 바깥놀이 기회의 제공 등과 연관되어 있다. '안전한 환경을 누리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게 한다는 CP의 목표 역시 놀이정책에서 시행하기로 한 '안전'과 '자율'간의 균형이라든가, home zone(20마일 속도 제한지역)의 추가 지정과 관련된다.

2. 추진방법 및 참여기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현 놀이정책은 2007년에 새로 개편된 아동·학교·가족부(http : //www.dcsf.gov.uk)가 주도하고 있으나 다른 중앙 행정부들과의 협력 하에, 그리고 지방정부들에게 다양한 자료와 노하우를 제시하면서 추진

하고 있다. 여러 관련 자료들[6]을 조합하여 추진 방법을 파악해 보면, 아동・학교・가족부는 현 놀이정책의 실무를 총괄할 파트너 기구로 Play England 팀을, 영국 전역에 걸친 놀이종사자(play workers) 양성을 주관하는 기구로 SkillsActive 및 Playwork Partnership팀을,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정부 자문 기구로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 Built Environment)팀을 지정하였다. 정책의 실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1차 사업기간 동안 정부가 지정한 복권 수익금 운영 기구인 Big Lottery Fund의 기금 중에서 지원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놀이관리자(play shaper)를 양성한다. 한편, 잉글랜드 전역의 지방정부들은 소속 아동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연구와 실무가 가능한 파트너들로 팀을 구성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제시한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는 지역별 놀이전략(play strategy)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렇게 하여 조직된 지방정부의 실전팀들 가운데 중앙정부가 선도적 팀으로 선정한 팀들을 팀별 전략에 따라 play pathfinder(길잡이팀) 또는 play builder(건축팀)로 지칭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와 같은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함께 참여한 기구들은 대부분 이전부터 있던 단체들로, 금번의 놀이정책을 위해서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구들 이외에도 아동의 놀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민간 전문단체들이 참여하였는데, 예를 들면 Free Play Network, PlayLink, National Playing Fields Association 등이다. 이러한 기구 및 단체들의 역사와 설립 목적, 그리고 활동분야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Play England(http : //www.playengland.org.uk) : 영국의 현 정부가 놀이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 파트너로 지정한 핵심기구이다. 1963년에 발족된 National Children's Bureau(전국아동단체총연합회, http : //www.ncb.org.uk)의 산하 부서로, 원래의 명칭은 Children's Play Council(아동놀이협의회)이었다. National Children's Bureau는 산하에 기획개발부, 재정사무부, 복지건강부, 장애 및 저소득층부, 연구 및 평가부, 정책 및 참여부, 그리고 현재의 Play England(잉글랜드놀이부)가 있다. Play England의 과거 발족 시 성격은 아동의 놀이에 관여하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다양한 단체들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에 로또복권 수익금 운용기관인 Big Lottery Fund가 주요 사업으로 '아동놀이시책(Children's Play Initiative)'을 시행하기로 하고, Children's Play Council에 1천5백만 파운드(약 2백60억 원)를 수여함에 따라 2006년에 부서의 명칭을 Play England로 바꾸고 조직을 확대・개편하였다. 잉글랜드의 모든 아동을 위한 놀이 기회와 놀이 프로비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Play England는 연구, 학회 및 세미나 개최, 전시회 및 이벤트 개최, 네트워크 형성 지원, 전문가 훈련, 출판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한다. Play England는 영국 내 다른 3개국의 놀이정책 실무 기관들(Play Wales, Play Scotland, Playboard Northern Ireland)과도 폭넓게 교류한다.

② SkillsActive와 Playwork Partnership : SkillsActive(http : //www.skillsactive.com)는 영국 내 경제활동 인구의 인력개발과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정부가 조직한 25개의 분야별 기구 중 '레져와 학습 섹터(Active Leisure and Learning

6) 여기에서의 관련 자료라 함은 Play England사이트의 모든 메뉴별 자료와 현 놀이정책에 관련된 정부간행물들을 의미한다.

Sector)'에 속한 부서이다. 레져와 학습 섹터는 스포츠, 레크레이션, 건강, 놀이 등에 종사하는 경제활동 인구를 업무의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산하의 SkillsActive는 현 놀이정책의 주요 부분인 놀이종사자(play workers)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SkillsActive는 2016년까지 놀이종사자 직업을 아동 관련 직종(Children's Workforce) 중 핵심 직으로 부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편, Playwork Partnership(http : //www.playwork.co.uk)은 University of Gloucestershire를 본거지로 하는 놀이종사자 훈련 기관으로, 놀이 및 놀이관련 직종의 가치를 고양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③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 Built Environment, http : //www.cabe.org.uk) : 건축, 도시디자인, 공공 공간 조성 등에 관하여 정부에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다. 1999년에 법적 근거 하에 16명의 위원으로 조직되었으며,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지역공동체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예산과 지원으로 활동한다.

④ Big Lottery Fund(http : //www.biglotteryfund.org.uk) : 로또복권 전체 수익금의 1/2 정도를 배분하는 가장 큰 복권 수익금 운용기관이다. 2006년에 전국 로또복권법(National Lottery Act)에 의해서 중앙의회의 인준을 거쳐 조직된 공적 기관으로, New Opportunities Fund, Millennium Commission과 같은 기존의 복권 수익금 운용기구와 프로그램들이 해체되면서 그 업무를 이양 받았다. Big Lottery Fund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결속과 안전 그리고 복지를 신장시키는 것으로, 운용 기금의 60-70%가 자원봉사단체와 지역사회단체에 지원된다. 현재는 아동놀이시책(Children's Play Initiative)이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⑤ PlayLink(http : //www.playlink.org) : 1962년에 '런던모험놀이터연합'으로 발족하여 1993년에 전국 연합으로 확대된 단체이다. 놀이와 레져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민간단체로, 공간디자인, 사업기획, 정책평가, 전략수립, 기금모금, 지역 개발 및 참여, 조직 구성 등을 담당한다. 아동발달, 문화, 행정 및 법규, 재무, 주택정책 및 기획, 공원개발, 조경, 건축,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가치관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조직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한다.

⑥ Freeplay Network(http : //www.freeplaynetwork.org.uk) : 어린이의 놀이기회가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공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모임이다. 다양한 토론, 정보교환, 놀이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한 놀이 지도 실제의 적용 등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⑦ National Playing Fields Association(http : //www.fieldsintrust.org) : 어린이를 위한 운동 공간과 놀이 시설의 열악함을 개탄한 조지 5세가 1925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영국 내 4개국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이다. 1933년에 황실자선기금(Royal Charter)을 받게 된 후, 지난 60여 년간 황실로부터 재정적・행정적 후원을 받아왔다. 야외 놀이 공간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신념하에, 옥외 공간의 확보와 보호 그리고 개선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활동 분야는 부지의 분석・산정・공간기획에 관련된 테크니컬 컨설팅, 정책 참여 및 캠페인, 재정 확보 및 지원, 연구 및 출판 등으로 다양하다. 홈페이지 내의 'fields finder'라는 메뉴에 영국 전역의 야외 놀이공간과 운동장을 살펴볼 수 있는 막대한 규

모의 지리학적 정보를 탑재하는 등, 야외 활동과 놀이에 관한 유용한 내용을 첨단의 기술로 제공한다. 2007년에 단체명을 Fields In Trust로 변경하였다.

⑧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http : //www.partnershipsforschools.org.uk/programme/programme.jsp) : 아동 · 학교 · 가족부의 전신인 교육 · 기술부(DfES)가 2004년에 기획한 잉글랜드 내 모든 중등학교의 개축(transform) 프로그램(capital investment program)이다. BSF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위 학교 건축 사업으로, 3천 3백만 명의 중 · 고등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전면 탈바꿈시킨다는 비젼으로 시작되었다. 교육 · 기술부는 이러한 BSF의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 그리고 전국적인 파급(delivery)을 담당할 기구로 Partnerships for Schools라는 부서를 조직하였다.

⑨ Joseph Rowntree Foundation(http : //www.jrf.org.uk) : 잉글랜드의 성공한 사업가인 Joseph Rowntree가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 하에 1904년에 설립한 복지 재단으로 잉글랜드 뿐 아니라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JRF는 물질적인 베풂을 통한 자선에 머무르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주역 사업의 예로는 아동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깨끗하고 · 안전하고 · 푸르른 공공장소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 등이 있으며, 아동의 놀이를 되살리는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과거에 수행한 업적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진 2007-8년도의 정부 간행물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놀이정책의 내용이나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는 출판물이지만,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취하기로 한 몇 가지의 중요한 방법론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모든 출판물들이 시작 부분에서 놀이의 가치와 본질을 다룬 것은 놀이정책의 수립과 적용이 철저하게 원론과 이론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의 목적을 반복적으로 기술하면서 더 큰 틀의 아동정책인 'Children's Plan'과 연결 짓는 것, 그리고 2003년도에 중앙의회에 제출된 정책 제안서였던 'Every Child Matters'와 개정 아동법인 'Children Act 2004'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 31조(놀이조항)를 언급하는 것은 현 놀이정책의 실행과정이 원래의 목적과 법적 · 정책적 뿌리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동의 놀이를 국가적 전략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서 *Fair Play Consultation*이라는 여론 수렴 연구를 실시한 것은 놀이정책이 기회 균등을 목표로 하여 반드시 여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Play Builders(건축팀)를 위한 책자로 공간 및 시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물[7]과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연구물[8]을 제시한 것은, 놀이정책이 '영감과 흥분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위험과 모험으로부터 오는 도전감'을 균형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각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놀이정책의 수립을 위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명한 *Play Strategy*는 특별히 Play Pathfinders(길잡이팀)를 위한 책자인데, 이는 놀이정책이 지역 사회에서의 합의와 협력을 도출하여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7) *Design for play : A guide to creating successful play space*(Shackell et al., 2008).

8)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 Implementation guide*(Ball et al., 2008).

중앙정부에서는 이 외에도 각 지방정부가 아동의 놀이를 중시하는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놀이정책의 정신과 실행 상황을 손쉽게 홍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서 사이트[9]에 사진과 문구가 들어 있는 포스터와 형판(presentation/advertisement templates)을 컴퓨터 화일로 제공해서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로고나 정보를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사이트에 특정한 놀이시책(예 : 야외 놀이)의 수립과 수행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합의 도출-계획-전파-착수) 및 각 단계에서 필요한 소통 방법,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경험한 지방정부의 사례들을 담아서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구집(tool kit)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은 지방 정부의 수행 사례들에서 일관성 있게 표면화 된다. 예를 들면, Devon County에서는 2009년에 카운티 내의 모든 지역에서 지향할 놀이전략 기본서를 출간하였다(Devon Children's Trust, 2009). Wirral Borough에서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버로우 내에서의 놀이전략과 함께 상세한 실행계획 일정표를 제시하였다[10]. 이러한 자료들에는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놀이 정책의 목적과 사회적 정황, 놀이의 정의, 행정구역 내의 놀이 실태와 여론 수렴 결과, 놀이정책을 위해서 아동위원회가 형성한 파트너쉽, 해당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놀이정책, 앞으로의 실행계획, 벤치마크 기준, 사업실행 후의 평가 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다.

9) http : //dcsf.gov.uk/play

10) http : //www.wirral.gov.uk/LGCL/100003/200104/Final_Wirral_Play_Strategy_2007.pdf와, http : //www.wirral.gov.uk/LGCL/100003/200104/content_0000349.html에서 검색(2009. 11. 6)

3. 이전의 법적 · 학문적 · 정책적 배경

영국의 중앙정부가 놀이를 아동의 삶의 질과 직결된 요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정책의 주제로 삼게 된 데는 최근 이십 년 간 일어난 법률적 변화와, 놀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 및 전문단체의 활동, 그리고 이에 뒤따른 정책적 변화가 관련되어 있다.

먼저 법률 및 그에 준하는 계기를 살펴보면, 1992년에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의 중요성을 주제로 다룬 헌장이 처음으로 채택되어 책으로 출판되었다. *Charter for Children's Play*(아동놀이 헌장)라는 제목의 이 책은 National Children's Bureau(NCU, 전국아동단체총연합회)가 이루어낸 업적으로, 1998년에는 NCU 산하의 Children's Play Council(CPC, 아동놀이협의회)이, 그리고 2007년에는 CPC를 확대 개편한 Play England (잉글랜드 놀이부)가 개정 작업을 전담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한 제 31조의 의미, 아동의 놀이 실태, 아동의 놀이 욕구, 아동놀이헌장의 목적과 이용 방법 등을 다룬 이 책은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관련된 사회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선언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2003년에 발생한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어린이의 학대 · 살해사건은 영국이 보호와 배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조차도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자각과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에 이 사건에 대한 정계의 공식적인 반응으로 의회에 제출된 *Every Child Matters*(DCMP, 2003)라는 green paper[11]는 기존의 아동법(Children Act)을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차후 영국이 자

11) 영국의 경우, 입법 또는 정책 제안서

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에 전면 개정된 아동법은 'Children Act 2004'(HM Government, 2004)로 이름 붙여졌고,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아동의 삶과 복지에 관한 당시의 실상과 향후의 비젼을 담고 있는 'Every Child Matters'는 현 정부의 아동정책인 'Children's Plan' 및 그 핵심 부분인 놀이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법적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무렵, 영국의 학계와 전문 단체들 사이에서는 놀이시간과 기회, 그리고 다양성이 감소되는 아동의 놀이 실태를 우려하는 견해가 강하게 피력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사회활동이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면, Joseph Rowntree Foundation의 지원으로 1997년에 수행된 *Child's Play : Facilitating play on housing estates*(Wheway & Millward, 1997)는 최근 100년간 조성된 열두 개의 주거지에서 3천 5백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놀이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의 특징과 그들이 선호하는 놀이 공간, 주거지 안전의 개선 방법, 놀이공간으로 가장 좋은 부지의 특징, 가장 안전한 형태의 골목길과 대로 연결망, 친자연적인 놀이 환경의 수효 실태와 접근의 용이성, 주거지 및 지역 디자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놀이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놀이 관련 전문 단체인 PlayLink가 1999년에 수행한 *Play at Schools*와, 2002년에 수행한 *Play as Culture*도 놀이를 본질에 입각해서 재개념화한 주목할만한 연구였다. *Play at Schools*는 90년대 초반 무렵 여러 초등학교들이 PlayLink측에 학교 운동장의 개선을 위한 자문을 구함에 따라 기획되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던 중 PlayLink 측이 실감한 것은 학교들이 운동장을 개선하려는 동기가 쉬는 시간 동안 어린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붙들어 둘 수 있는 놀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학교의 하루일과 가운데 쉬는 시간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쉬는 시간은 학생에게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였고, 형식적인 교육이 잠시 중단된, 그러므로 특별한 원칙이나 정책이 결여된 시간이었다. *Play at Schools*는 학교 현장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오개념을 바로잡기 위하여, 즉, 학교들이 쉬는 시간을 '수업을 중단한 시간'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는 곧 학교가 갖고 있는 놀이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연구였으며, 그러한 변화를 실제로 시도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입증해 보인 연구였다.

한편, *Play as Culture*는 문화 · 스포츠 · 미디어부의 지원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문화전략 수립을 안내하기 위한 책자로 집필되었다. 제목에서처럼 놀이가 문화로서 이해되고 또한 문화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PlayLink의 입장은 두 가지의 사실에 근거한다. 첫째는, 최근 들어 어린이의 놀이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질적인 놀이 프로비젼의 개념이 점차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문화전략을 기획하는 것은 놀이를 삶의 질과 연결 지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며, 어린이의 발달 과업과 레크레이션 욕구에 대해 창의적인 정책으로 부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문화전략에 놀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Play as Culture*는 그러한 업무를 공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놀이를 문화로

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그러한 이해와 행정적 전략을 언어와 문서로 피력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원론적 문구들을 제시해 놓았다.

학문적·사회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놀이에 대한 공적 투자의 필요성을 다룬 연구물이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Best Play, What Play Provision Should Do for Children*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지원으로 놀이 관련 전문 단체인 National Playing Fields Association, Children's Play Council, 그리고 PlayLink가 2000년에 집필하였다. *Best Play*는 놀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적 투자로서 놀이 프로비젼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및 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이점을 설명하였다. 책의 서두에서 집필진은 놀이의 발달적 가치와 사회적 효용성이 학계에서는 이미 밝혀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대 사회는 텔레비젼과 컴퓨터의 생활화, 트인 공간의 잠식, 학습에 대한 강조, 안전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의 반 놀이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어린이들의 놀이실조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그 결과는 비정상적인 뇌 발달에로까지 이른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놀이를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환경적 여건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적 놀이 프로비젼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필진은 이러한 공적 놀이 프로비젼의 개발과 제공에는 필히 놀이의 본질 및 놀이와 직결된 요소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놀 권리에 대한 인정, 놀 자유의 허용, 평등한 놀이 기회의 제공, 아동의 능력에 대한 존중, 위험요소와 성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다. 즉 공적 놀이 프로비젼을 담당할 관계자들은 먼저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치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Making the Case for Play : Building policies and strategies*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 역시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Children's Play Council의 후원으로 Hamilton과 Gill이 2002년에 완성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2년에 걸쳐 실시한 현장 자료의 분석 결과, 잉글랜드 아동들의 놀이기회가 놀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연구진이 제안한 것은 가치·원칙·목표의 합의에 기초한 국가적 놀이전략의 수립, 놀이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 및 지원 제공, 지역별 필요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놀이전략 수립, 부모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전략적 협력 등 이었다.

아동의 놀이에 대한 대규모의 기금 지원이 정책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2001년 6월에 영국 정부가 복권 수익금 배분 기구인 New Opportunities Fund로부터 2억 파운드(약 3천6백억 원)를 출자하여 아동 놀이 분야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DCMS, 2004). 그 중 1억7천6백만 파운드는 직접사업비의 명목으로 4년 뒤인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는데(Powell, 2007), 세부적으로는 정책실무를 주도할 Children's Play Council과, 혁신적인 아동 놀이 지원 방법을 공모하는 Playful Ideas Program, 그리고 지방정부들의 놀이정책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Children's Play Program에 투입하기로 하였다[12].

그러나 아동의 놀이에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최초의 대규모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2) http : //www.playengland.org.uk 메뉴 중 News & campaigns 자료(제목 : Play England appointed to support national play strategy)에서 검색(2009. 5. 20)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 아동의 놀이에 관한 정책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장관이, 중앙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보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Frank Dobson에게 의뢰하여 해당 지원금을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연구는 1년 여 기간 동안 진행된 후, 2004년에 *Getting Serious about Play : A review of children's play*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지원금의 실질적인 지출이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실행된 것은 이러한 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보고서는 놀이의 정의와 가치, 그리고 놀이에 필요한 환경적 여건을 강조하면서 놀이기회가 격감된 최근의 사회상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관련 문헌 고찰, 1,500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은 영국 전역에 걸친 온라인 설문조사, 14회의 전문가 협의회, 119명의 의회 의원 설문 조사, 부모 관심 그룹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은 놀이정책이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놀이정책의 수립 방향이자 평가 기준으로 'VITAL'이 제안되었다. 즉, 지방정부들이 New Opportunities Fund의 지원금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놀이정책을 기획하려면 'Value based (놀이에 관한 적합한 가치관이 녹아 있고)', 'In the right place(가까운 곳에 안전한 형태로)', 'Top quality(우수한 디자인과 적절한 위험요소가 안배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Appropriate(지역 내 모든 섹터의 요구를 감안하여)', 'Long term(해당 지원금 만료 이후의 대책이 강구된)' 등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한편, 2006년에 Children's Play Council이 내놓은 *Planning for Play*라는 책자는 지방 정부들이 *Getting Serious about Play*에서 제안된 틀대로 놀이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보다 1년 앞서 2005년에 나온 런던 지방정부의 놀이전략[13] 책자도 *Getting Serious about Play*의 결론에 기초한 전략으로서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는 있으나, *Planning for Play*가 좀 더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Planning for Play* 역시 놀이의 정의와 가치, 그리고 놀이정책의 필요성과 법적 맥락에 대한 설명에 일정 부분을 할애한다. 그 이후의 가이드라인 부분에는 놀이전략의 개발에서부터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시작-준비-분석 및 고찰-협의와 결정-시행 및 평가 등 각 단계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Planning for Play*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 놀이섹터(놀이영역에 관련된 학자, 교육자, 사회단체, 업체 등)의 파트너쉽 형성과 역량 강화이다.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이가 지속적으로 인정되고, 놀이를 통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후 관계를 맞춰 보면, 2008년부터 중앙정부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현 놀이정책은 2001년에 New Opportunities Fund의 출자로 시작된 놀이에 대한 최초의 정책적 지원이 2007년으로 만료되면서, 중앙의회에서 Big Lottery Fund로부터 더 큰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중앙정부가 놀이정책을 국가적 전략으로 주도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에서의 놀이기회 감소와 놀이실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동의 놀이를 위해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는 공적인 책무가 되었

13) http : //www.london.gov.uk/mayor/strategies/play/docs/play_strategy.pdf에서 검색(2009. 8. 3)

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Ⅳ. 논의 및 결론

국가적 전략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영국의 현 놀이정책은 영국이 바람직한 아동 교육과 복지의 성취를 위한 국가적 가치관의 하나로 '놀이'를 채택하였음을 의미한다. 놀 권리와 자유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행복한 아동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행복하게 놀이를 하는 아동의 모습은 그 나라의 건전성과 생명력을 반영하는 척도(Children's Play Council, 2006)라는 인식이 정치적으로 강화된 것이다. 나아가 놀이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이며 전인적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심화되어가는 놀이실조의 실태와 놀이기회의 불평등은 국가적 위험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모든 아동에게 풍부한 놀이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기회균등 원칙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가 필히 성취해야 하는 과업이 된 것이다. 그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영국이 선택한 분야가 바로 놀이 프로비전, 즉 잉글랜드 전역의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의 개선이었고, 이와 함께 놀이 프로비전에서 질적인 놀이를 안내하고 지도할 놀이종사자 인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영국 정부가 아동의 놀이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동안 계속된 학계 및 여러 단체의 연구 와 사회활동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사가 깊은 전문 단체와 소속 학자들이 최근 십여 년 간 아동의 놀이실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고, 실증적인 연구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빅토리아 클림비의 죽음을 계기로 아동의 교육과 삶에 관련된 영국의 환경 및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법적 정비작업을 수행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어서 놀이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강구되기까지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놀이를 국가적 전략으로까지 채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담당하던 기존의 교육・기술부를 아동교육과 복지를 총괄하는 아동・학교・가족부로 개편한 것에 의해서였다. 이로써 놀이정책은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복지정책으로 아동・학교・가족부가 주도하여 보다 강력하고도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이다.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 청소년과 가족, 유・초・중・고등교육이 각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영국의 놀이전략은 놀이가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 그리고 놀이영역의 인력 개발에 대한 전격적인 투자라는 측면에서 유형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을 실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놀이에 대한 가치의 정립을 중시하고,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와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측면은 이론적이고 정신적이므로 무형적인 특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제적인 특징도 강하다. 놀이 프로비전의 사용자와 제공자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단위의 여론수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지역별 아동 인구에 대비한 기존 놀이공간에 대한 분석(규모, 수, 주거지로부터의 거리, 구성, 사용실태 분석 등)이라든가, 인구 및 국가빈곤지표에 의거하여 아동 당 지원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전체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Powell, 2007) 등은 매우 과학적이다. 또한 지방 정부가

놀이전략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개념적인 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침서와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은 실제적인 측면이다.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영국의 지방정부들이 제시하기 시작한 놀이전략 기획안들이 공통성과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최대한 수렴하여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현 놀이정책은 시작단계에 있는 정책이므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놀이정책 이전에 2억 파운드의 NOF 기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아동놀이프로그램(Children's Play Program)에 대한 중간평가는 몇 가지의 중요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즉 놀이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논쟁 자체는 매우 필요했고 생산적이었다는 것, 사회 통합적인 전략의 수립이 가능했다는 것, 놀이의 위치가 합법화 되었다는 것, 청소년과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개선안이 마련되었다는 것, 놀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증진되었다는 것 등이었다(Powell, 2007).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놀이실조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조명되어 온 경향이다(이종희 · 조은진 · 김송이, 2009).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다각적으로 입안되고 적용되고 있긴 하나, 국가적 차원의 놀이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1957년에 공포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서 놀이시설과 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나,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것, 해당 유엔 협약에 대한 이행의 일환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을 2008년에 제 · 개정한 것 정도가 놀이의 중요성을 제도적 또는 공적으로 인정한 지극히 한정적인 예일 뿐이다. 한편, 국가적 차원의 놀이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최근에 시 차원에서 놀이 프로비전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어린이공원 1,074곳 중 300개소의 개선을 위하여 1,440억 원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사업이다(서울시정소식, 2009. 2. 1; 2009. 4. 9). 이 사업에는 2004년부터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http : //sfac.or.kr)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공원의 놀이터가 대부분 구성이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일 뿐 아니라, 재정 자립이 어려운 자치구의 놀이터는 노후화 된 곳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서울시정소식, 2009. 2. 1). 이에 서울시는 아동 ·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놀이공간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놀이터 개선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주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원의 실제 조성에 앞서 어린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디자인 워크숍을 실시하여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린이와 주민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공원 테마 아이디어 공모, 대학생 디자인 공모, 전문설계 업체 현상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고(서울시정소식, 2008. 9. 24), 어린이들의 안전을 감독하고 다양한 놀이를 지도할 수 있는 공원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서울시정소식, 2009. 4. 28).

서울시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국가 차원의 사업은 아니지만 놀이 프로비전에 대한 공적 투자라는 점, 상상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 어린이와 주민의 여론을 중시한 점, 놀이종사자 인력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이 영국의 놀이정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놀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전문적 합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놀이란 무엇인지, 우리 아동들의 놀이 실태는 어떠한지, 그러므로 놀이다운 놀이를 위해서는 놀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상상어린이공원 현상설계 공모 지침(서울시정소식, 2008. 4. 3)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심리・발달・놀이 분야나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을 뿐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언급(서울시정소식, 2008. 4. 3) 이외에는 더 큰 틀에서의 정책이나 법적 기반에 대한 설명이 없다. 놀이 분야의 인력 개발과 고용에 대해서도 계획으로서만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 영국의 경우에서처럼 국가적 인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놀이종사자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영국과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하게 된 동기와 배경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을 뒷받침하여 낙후된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것을 동기로 삼고 있는 반면, 영국은 1990년대부터 사회각계에서 제기되어 온 놀이실조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이자 아동교육 및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놀이 프로비젼의 개선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영국의 예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터의 전면적인 개선에 뜻을 둔 것이나,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공적 기관이 놀이터 문화 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우리의 사업이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은 약해 보인다. 그것은 서울시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동 놀이정책을 뒷받침할만한 다양한 전문단체가 부재하고, 학계의 사회적 활동도 결여되어 있으며, 법적인 배경 또한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는 영국의 놀이정책에 주목하고, 그 내용과 진행방법을 면밀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동교육 및 복지의 문제를 '놀이정책' 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각도에서 접근하는 영국의 예가 서울시 차원에서만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 국가적 가치와 법적 근거를 결부시켜서 아동을 위한 새로운 교육・복지・문화정책으로 시도해 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실조 실태에 대한 파악, 놀이의 정의에 대한 학문적 합의, 놀이정책 및 법적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진단, 놀이 관련 전문 단체 및 놀이지원 인력에 대한 조사 등 다양한 기초 작업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공감코리아(2009. 7. 7). 정부, 사교육비 줄이기 '총력전' http : //korea.kr/newsWeb에서 2009년 7월 7일 인출.

뉴시스아이즈(2009. 7. 7). 갈피 못 잡는 MB정부 사교육비 대책 어디로 가나. http : //new.naver.com에서 2009년 7월 7일 인출.

서울시정소식 보도자료(2008. 3. 5). 서울시내 놀이터,

어린이 테마공원으로 부활. http : //ssp.seoul.go.kr/main/news에서 2009년 9월 26일 인출.

서울시정소식 보도자료(2008. 4. 3).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현상공모 공고. http : //ssp.seoul.go.kr/main/news에서 2009년 9월 26일 인출.

서울시정소식 보도자료(2008. 9. 24).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어린이와 주민이 밑그림 주도. http : //ssp.seoul.go.kr/main/news에서 2009년 9월 26일 인출.

서울시정소식 보도자료(2009. 2. 1). 상상해보자! 어린이날 개장하는 50개의 명품 공원을!! http : //ssp.seoul.go.kr/main/news에서 2009년 9월 26일 인출.

서울시정소식 보도자료(2009. 4. 9). 서울시, 2010년 어린이날까지 상상어린이공원 300개 조성. http : //ssp.seoul.go.kr/main/news에서 2009년 9월 26일 인출.

서울시정소식 보도자료(2009. 4. 28). 서울시의 올해 어린이날 선물은 상상어린이공원 50개소. http : //ssp.seoul.go.kr/main/news에서 2009년 9월 26일 인출.

세계일보(2009. 6. 26). "대통령이 심야교습 금지하는 것은 난센스"- 김문수 경기지사, 과도한 개입에 쓴 소리. http : //segye.com에서 2009년 7월 7일 인출.

아시아경제(2009. 7. 7). 권대우의 경제레터 '사교육과의 전쟁' http : //www.asiae.co.kr에서 2009년 7월 7일 인출.

연합뉴스(2009. 6. 16). 미 교육부, 통일된 학력평가시험 추진. http : //news.naver.com에서 2009년 6월 24일 인출.

이종희 · 조은진 · 김송이(2009). 놀이. **아동학회지, 30** (6), 309-321.

중앙일보(2009. 7. 25). 철저한 평가 · 보상, 오바마, 교육개혁 시동, p.20.

한국일보(2006. 7. 26). 미 낙제방지법 주정부와 갈등. http : //news.hankooki.com에서 2009년 6월 24일 인출.

mbn 뉴스채널(2009. 3. 11). 뉴스 : 오바마 "한국 수업량 따라가야"

Ball, B., Gill, T., & Spiegel, B. (2008).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 Implementation guide*. London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Play England.

Children's Play Council (1992). *Charter for children's play*. London : National Children's Bureau.

Children's Play Council (1998). *New charter for children's play*. London : Children's Society. National Children's Bureau.

Children's Play Council (2006). *Planning for play-guidance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local play strategy*. London : Children's Play Council.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 Families (2007). *The Children's Plan : Building brighter futures*. London : DCSF.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 Families (2008a). *Fair play : A consultation on the play strategy*. London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 Families (2008b). *Statutory guidance to Children's Trust*. London : DCSF.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Familie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2008). *Play strategy-play for life*. London : DCSF Publication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2003). *Every Child Matters green paper*. Norwich : The Stationery Offic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2004). *Getting serious about play*. London : DCMS.

Devon Children's Trust (2009). *Serious about play- a county-wide play strategy for Devon*. Devon County Council.

Hamilton, I. S., & Gill, T. (2002). *Making the case for play-build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chool-aged children*. London : National Children's

Bureau/Children's Play Council.

HM Government (2004). *Children Act*. London : The Stationery Office.

Lester, S., & Russell, W. (2007). *Play for a change : Play, policy, and practice-A review of contemporary perspectives*. London : National Children's Bureau/Play England.

Loveless, T., & Petrilli, M. J. (2009, August 26). Smart Child Left Behind. *The New York Times*. http : //topics.nytimes.com/top/reference/timestopics/subjects/n/no_child_left_behind_act

National Playing Fields Association, PlayLink, & Children's Play Council (2000). *Best play : What play provision should do for children*. London : NPFA.

Play England (2007). *Charter for children's play*. London : Play England.

Play England (2009). *How children's play contributes to the National Indicator Set*. London : National Children's Bureau.

PlayLink (1999). *Play at schools*. London : PlayLink.

PlayLink (2002). *Play as culture*. London : PlayLink.

Powell, W. (2007). Strategic planning for play in England. *Playrights*, *29*(4), 13-17.

SkillsActive (2006). *Quality training, quality play 2006-2011*. London : SkillsActive.

Shackell, A., Butler, N., Doyle, P., & Ball, D. (2008). *Design for play : A guide to creating successful play space*. London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Play England.

The Associated Press(2009, September 24). No Child Left Behind Act updated. *The New York Times*. http : //topics.nytimes.com/top/reference/timestopics/subjects/n/no_child_left_behind_act

Times Topics (2009, September 24). White House looks to improve No Child Left Behind. *The New York Times*. http : //topics.nytimes.com/top/ reference/ timestopics/subjects/n/no_child_left_behind_act

Wheway, R., & Millward, A. (1997). *Child's play : Facilitating play on housing estates*. Westwood way, Coventry : The Joseph Rowntree Association and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2010년 2월 27일 투고, 2010년 5월 8일 수정
2010년 5월 25일 채택